

建築士事務所의 活性化를 위한 提言

韓鍾彥

本協會 理事·綜合建築士事務所 錦成

근래 協會를 자주 드나들다 보니 가끔 건축사 사무소의 補助員, 建築土補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게된다. 내용인 즉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보조원 문제로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지방회원님들에게서 이와같은 불만이 큰편인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 마침 지난달 法개정으로 建築土補의 資格基準이 완화되어서 꼭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건축을 시작할때만 해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建築志望生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6.25한국동란으로 사회적인 여건도 그러하였지만 건축을 한다해도 고작 설계규모가 幾百 m² 되는 건축물이 대부분이었고, 幾千 m² 만 되어도 큰 프로젝트였으니까. 따라서 설계 사무소도 그 수가 많지 않았으며 대개 어느느 사무소하면 거의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戰後 건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설계 사무소도 그 수가 많이 생겼으며 규모도 대형화되어가고 建築土補도 수적으로 상당히 많아졌고 수준 또한 괄목할 만큼 향상되어 갔다. 때마침 建築士法이 제정되어 朝鮮總督部令 이후 그간 무질서했던 건축계에 일단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1966년 이후 건축설계 사무소의 형태가 그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70년대에 들어서자 설계 사무소의 규모도 大形化하기始作했다. 사무소의 성격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建築土補도 그 수가 전국에 걸쳐 일만여명에 달하게 되었고 분야별로 상당한 專門性을 띠게 되었다.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중동붐으로 건설업체의 해외진출과 아울러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우리 건축사 사무소에는 큰 희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겨우 자리를 잡고 질서를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던 건축설계 지망생들은 중동 진출로 인한 기술인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건설업체들에 의하여 마구잡이로 무방비상태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수

없이 스카웃 해 갔다. 줄잡아 그 수는 약 일만여 명을 상회하리라고 본다.

건축설계 사무소는 젊은 건축지망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財政面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맞서 이들 유능한 건축설계지망생들을 유치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는 자체인력을 양성 활용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겨우 키워둔 인력을 힘안들이고 데려다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정부나 대기업 건설업체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길이 없었으며 建築士 이외에는 이 가슴아팠던 시절을 몰랐을 것이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업의 해외진출에 일익을 담당·기여하였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건축사 사무소는 상당기간동안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었다. 이점에서 관계당국이나 대기업 건설업체에서는 한번쯤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공식적으로 표해야 할 것으로 안다.

건축설계 사무소는 技術蓄積이 다소나마된 建築土補는 상당수 빼았기고 갓 대학을 졸업한, 아니면 공고를 졸업한 실습생과 확고한 신념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일부 热望生으로 60년대 후반기와 비슷한 시절을 맞이해야만 했었다. 건축사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대형프로젝트는 나오고 따라서 턴키이베이스(turn-key base) 사업까지 쏟아져 한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은 건축사면 누구나 다 체험했으리라.

세월이 흐르면서 건축사 사무소의 구조는 더욱 다양화 되었으며 이제 안정추세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건축사 사무소가 內實을 기하여 質적으로 알차야 하며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차원 높은 건축문화를 발전시켜가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문제점은 있는 것 같다. 建築에 立志하여 대학졸업후 5~10년쯤 실무경력을 쌓고 어느정도 기술축적이 되어 같이 팀(team)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기에 建築士資格을 얻어 따로 독립해서 建築士 事務所를 개설하

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각자 독립하여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보다 더 좋은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대형화된 프로젝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팀이 필요하게 되는데 각자 독립함으로 인해서 유능한 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高級人力을 건축사 사무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建築士法 改正으로 사무소의 형태가 單獨, 綜合으로 구성됨에 따라 건축적인 작업을 해야할 인력이 경영에 참여하게끔 유도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며 국제경쟁력과 기술축적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大形化 綜合事務所의 원래의 法趣旨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다시 말해서, 綜合事務所의 원래의 취지를 살려 대표건축사 이외는 개업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사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종합건축사 사무소 개설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되었으면 한다.

결론을 요약한다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보다 전문성을 띠고, 축적된 기술을 갖춘 유능한 인력이 共同으로 일할 수 있는 與件이 조성되어야 겠으며 아울러 책임민을 부여하고 기술육성법과 같은 혜택은 하나도 없는 현제도에서의 건축사 사무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지 않을까 염려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보다 나은 건축사 업무를 볼 수 있으며 건축문화 발전과 국제경쟁력도 배양되리라고 본다. 관계당국은 건축사 사무소 업무의 특수성을 십분 창작하여 보다 효과적인 육성책과 稅制惠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국내의 소규모 업무를, 대기업에서 海外用役을 목적으로 만든 엔지니어링 회사를 내세워 蠶食하는 행위 등을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사 자신도 스스로의 자세를 정비해야 하고 일반사회에서도 새로움과 인식을 가져줘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 이 글을 맺는다.